

대구지방법원 2020. 8. 28 선고 2018가단107678 판결 [점유회수(회복)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 리 인 법 무법 인 대 경 종합법 른사무소

담당변호사 조정

피 고 1. B

2.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

변론 종결 2020. 7. 17

판결 선고 2020. 8. 28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기재 부동산을 각인도 하고, 2015. 12. 16. 부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관한 판단

원고는 당초피고 들을 상대로, 피고들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위 부동산의 인도 및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00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, 원고의 2020. 5. 28. 자소취하에 대하여 피고들이 부동의 하자, 2020. 6. 26.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'피고 들은 원고에게 0원을 지급하라'로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.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(민사소송법 제263조).

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사실상 피고들에 대한 소의 취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, 피고 들이 2020. 6. 5. 소취하에 부동의 하여 그 효력이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허가하지 아니한다.

2.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즉, 원고는 경산시 D외 7필지 C아파트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기재 가스집하장(이하 '이 사건 가스집하장'이라 한다) 등 가스 시설물을 소유 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사업자로서 점유하고 있었다.

그런데 E이 위 가스집하장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고, 피고 들은 E의 악의의 특별 승계인이다. 따라서 피고 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스집하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, 2015. 12. 16. 부터 위 가스집하장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살피건대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

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이 효인

별지